

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휴먼뉴딜 한국판뉴딜			
보도일시	2021. 12. 29.(수) 석간 *인터넷 2021. 12. 29.(수) 09:00 이후 / 총 10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과 장 손필훈 서기관 최재운 사무관 김용욱	044-202-8804 044-202-8811 044-202-8812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1,243개 사업장 명단 공표

▶ 안경덕 장관,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,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산업안전보건법*(이하, '산안법')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.

* 개정 전 산안법 제9조의2 제1항: "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를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."

○ 공표대상은 ▲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·송치하여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, ▲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, ▲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,243개소이다.

○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(671 → 576개소, ▲95개소), 산재 미보고 사업장(116 → 59개소, ▲57개소)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1,470개소에 비해 227개소가 감소하였다.

□ 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(현장)은 총 1,243개소이며, 세부 기준(舊 산안법 시행령 제8조의4*)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*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'21년 명단 공표까지 개정 전 규정을 적용

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⇨ 576개소

❖ (제1항 제1호) 중대재해*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

*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

○ 576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(339개소, 58.9%), 50인 미만(484개소, 84%)이 대부분이며,

-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 지에스건설(주), 롯데건설(주), 동부건설(주), 삼성물산주식회사, 제조업 금호타이어(주), 효성중공업(주) 등이다.

②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⇨ 17개소

❖ (제1항 제2호)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
○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(주)한화 대전사업장(5명 사망, '18년), 대림종합건설(3명 사망, '17년), SK하이닉스(주)(3명 사망, '15년), 엘지디스플레이(주) 파주사업장(3명 사망, '15년) 등이다.

* '20년 이전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이 '21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대상에 포함

③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⇨ 산재은폐 23개소, 산재미보고 59개소

❖ (제1항 제2의3호)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
(제1항 제3호)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사업장

○ 산재은폐로 처벌되어 공표되는 사업장은 동남정밀(주), 에스티엠 주식회사, 주식회사 동우테크 등 23개소이며,

-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(주)광주사업장, 한국지엠(주)창원공장 등 59개소이다.

④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⇨ 11개소

❖ (제1항 제4호)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

○ 11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(9개소, 81.8%)이며, 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은 (주)한화 대전사업장(5명 사망, '18년), (주)에스에이치 에너지화학(1명 사망 + 2명 부상, '20년) 등이다.

○ 또한, 중대재해(1호, 2호) 및 중대산업사고(4호)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(산안법 제63조, 舊 제29조제3항)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*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.

* [건설] 에스케이에코플랜트(주), (주)호반산업 등 [제조] 쌍용씨앤이(주)동해공장 등

- 아울러, '18년부터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'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'에 따라,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(동국제강(주)부산공장)의 명단도 공표했다.

[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]

- ▲ (법적근거)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(개정 전, 법률14788호)
- ▲ (적용대상) 제조업,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 500인 이상 사업장
- ▲ (공표기준) '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'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

□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

- 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,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(CEO)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”이며,
- “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‘22.1.27.)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므로,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*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,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”을 강력히 당부했다.

* (9월) 50~299인 제조업 자율점검표 → (10월)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→ (11월) 폐기물처리업,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 → (12월) 건설업, 도소매업, 음식점업 자율점검표

[붙임1]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

[붙임2] 세부 기준별 공표 사업장 주요 현황

*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에서 확인 가능

↳ 고용노동부 누리집 : 「정보공개 - 사전정보공표목록 - 산재예방/산재보상」 게시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용욱 사무관(☎044-202-8812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

- (목적)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 → 경각심 제고 등 사업주 의무이행 유도

[舊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]

- ❖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(이하 “산업재해 발생건수 등” 이라 한다)을 공표하여야 한다.

□ (대상)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* 중 형(刑)이 확정된 사업장

*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0256호)」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부개정 되기 전의 舊 산안법 시행령 제8조의4 적용

[공표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(舊 산안법 시행령 제8조의4)]

①항 공표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

- 1호. (중대재해)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
- 2호. (사망자 2명 이상)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 - 2의2호. (사망만인율)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
 - 2의3호. (산재은폐)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
- 3호. (산재미보고)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
- 4호. (중대산업사고)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

②항 (원청도 함께 공표) 도급인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(도급 시 안전보건조치)을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, 수급인의 사업장이 1호, 2호, 2의2호, 4호에 해당하게 되면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

③항 (원·하청 통합공표)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,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표

□ (향후 조치) 공표된 사업장은 3년간(‘24년까지) 정부포상에서 제외

- 지방청별로 공표 사업장에 대해 CEO 안전교육 실시

붙임 2 세부 기준별 공표 사업장 주요 현황

[제1항 제1호]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

❖ (대상) 중대재해*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

*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

○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576개소

- (중대재해자 수) 중대재해 1명 발생 사업장이 521개소로 90.4% 수준

구 분	계	1명	2명	3명	4명	5명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76 (100.0)	521 (90.4)	39 (6.8)	9 (1.6)	5 (0.9)	2 (0.3)

- (업종별) 절반 이상(339개소, 58.9%)이 건설업이며, 이 외에는 기계기구·금속제조업(14.2%), 화학·고무제품제조업(4.3%), 시설관리및사업지원 서비스업(3.5%) 順

구 분	계	건설업	기계기구 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화학및 고무제품 제조업	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농업	도소매· 음식· 숙박업	수제품및 기타제품 제조업	기 타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76 (100.0)	339 (58.9)	82 (14.2)	25 (4.3)	20 (3.5)	11 (1.8)	10 (1.7)	10 (1.7)	79 (13.7)

- (규모별) 50인 미만 사업장(484개소, 84%)이 대부분이며, 100~299인(7.3%), 50~99인(4.0%) 順

구 분	계	50인 미만	50인 ~ 99인	100인 ~ 299인	300인 ~ 499인	500인 ~ 999인	1,000인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76 (100.0)	484 (84.0)	23 (4.0)	42 (7.3)	8 (1.4)	11 (1.9)	8 (1.4)

[제1항 제2호]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

❖ (대상)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
○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으로 인한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7개소

- 사망자 2명 발생 사업장(10개소, 58.8%)이 절반 이상이며, 건설업이 70% 이상을 차지(12개소, 70.6%)

연번	사업장명 (현장명)	업종	사망자 수	규모
1	연산알미늄	건설업	2명	50인 미만
2	(주)성산레텍	건설업	2명	50인 미만
3	삼인산업(주)	건설업	2명	50인 미만
4	주식회사거양	건설업	2명	50인 미만
5	일성건설(주)(원청) 은산토건(주)(하청)	건설업	2명	100~299인
6	진중합건설 주식회사	건설업	2명	50인 미만
7	수성수산	식품 제조업	4명	50인 미만
8	(주)한화대전사업장	화학제품 제조업	5명	500~999인
9	세인이앤티(주)(하청) (주)선양엔텍(하청)(구)	위생및유사 서비스업	3명	50인 미만
10	에이치오건설(주)(원청) 주식회사 아성산업개발(하청)	건설업	2명	50~99인
11	(주)대림종합건설(원청) 맹호타워, 주식회사 선흥기업(하청)	건설업	3명	100~299인
12	한국테크라인(주)	건설업	2명	50인 미만
13	(주)태영건설(원청) 상하건설주식회사(하청)	건설업	2명	100~299인
14	개인사업자 오희문 (의정부민락2 B-9BL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)	건설업	3명	100~299인
15	엘지디스플레이(주)파주사업장(원청) (주)아바코(하청) (주)코아백(하청)	전자제품 제조업	3명	1,000명 이상
16	SK하이닉스(주)(원청) (주)듀어코리아(하청)	전자제품 제조업	3명	1,000명 이상
17	두산건설(주)(원청) (주)국원토건(하청) 우상건설(주)(하청)	건설업	2명	500~999인

[제1항 제2의2호]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

❖ (대상)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

○ 사망만인율이 동종 평균 이상인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556개소

- 중대재해 발생 등(제1항 제1호) 공표대상과 중복 사업장은 544개소

- (업종별) 절반 이상(325개소, 58.5%)이 건설업이며, 이 외에는 기계기구·금속제조업(14.2%), 화학·고무제품제조업(4.1%),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(3.5%) 順

구 분	계	건설업	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	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농업	도소매·음식·숙박업	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	기 타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56 (100.0)	325 (58.5)	79 (14.2)	23 (4.1)	18 (3.2)	11 (2.0)	9 (1.6)	9 (1.6)	82 (14.7)

- (규모별) 50인 미만 사업장(457개소, 81.9%)이 대부분이며, 100~299인(9.0%), 50~99인(4.1%), 500인~999인(1.8%) 順

구 분	계	50인미만	50인 ~ 99인	100인 ~ 299인	300인 ~ 499인	500인 ~ 999인	1,000인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56 (100.0)	457 (82.2)	23 (4.1)	50 (9.0)	9 (1.6)	10 (1.8)	7 (1.3)

[제1항 제2의3호] 산재은폐 사업장

❖ (대상)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

○ 산재은폐로 인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23개소

- (업종별) 건설업(8개소, 34.8%), 기계기구·금속제조업(6개소, 26.1%) 順

구 분	계	건설업	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선박 건조 및 수리업	전문보건교육·여가·관련 서비스업	기타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23 (100.0)	8 (34.8)	6 (26.1)	2 (8.7)	2 (8.7)	5 (21.7)

- (규모별) 50인 미만 사업장이 70% 이상 차지(17개소, 73.0%)

구 분	계	5인 미만	5인 ~ 49인	50인 ~ 99인	100인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23 (100.0)	5 (21.8)	12 (52.2)	4 (17.4)	2 (8.7)

[제1항 제3호] 산재미보고 사업장

❖ (대상)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사업장

○ 산재미보고로 인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59개소

- (위반횟수별) 위반 2회 사업장이 70% 이상 차지(42개소, 71.2%)

구 분	계	2회	3회	4회	5회 이상
사업장 수(점유율, %)	59(100.0)	42(71.2)	8(13.6)	3(5.1)	6(10.2)

- (업종별) 기계기구·금속제조업(18.6%), 건설업(10.2%), 식품제조업(10.2%) 順

구 분	계	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건설업	식품 제조업	전문보건교육·여가·관련 서비스업	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	그 외 업종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9 (100.0)	14 (23.7)	6 (10.2)	6 (10.2)	4 (6.8)	4 (6.8)	4 (6.8)	21 (35.6)

- (규모별)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 차지(30개소, 50.8%)

구 분	계	50인미만	50인 ~ 99인	100인 ~ 299인	300인 ~ 499인	500인 ~ 999인	1,000인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9 (100.0)	30 (50.8)	6 (10.2)	13 (22.0)	4 (6.8)	3 (5.1)	3 (5.1)

[제1항 제4호]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

❖ (대상)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

-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1개소이며,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대부분 (9개소, 81.8%)

연번	사업장명	재해 발생일	사고유형	피해정도(명)	
				사망	부상
1	버숨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(유)	'20.2.2	화재	-	1
2	하이텍팜(주)	'20.2.24	폭발	-	2
3	롯데정밀화학(주)	'20.3.6	누출	-	1
4	(주)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	'20.3.6	폭발	1	2
5	하나제약(주)	'20.3.24	화재	-	1
6	코스모화학(주)	'20.4.2	누출	-	2
7	송원산업(주)	'20.6.15	화재	-	1
8	엘에스니꼬동제련(주)	'20.7.1	화재	-	1
9	(원청)코오롱인더스트리(주)울산공장 (하청)미래방재(주)	'19.10.30	폭발	-	2
10	다이토키스코(주)	'19.12.12	화재	-	2
11	(주)한화 대전사업장	'18.5.29	폭발·화재	5	4

[제2항] 원청도 함께 공표

❖ (대상) 수급인의 사업장이 1호, 2호, 2의2호, 4호에 각 해당할 때, 도급인 사업주가 제29조제3항(도급인 안전·보건조치)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

- 산안법 제63조(舊 제29조제3항) 위반으로 원청도 함께 공표되는 경우는 총 377개소

- (공표기준별) 대부분 중대재해 발생 등(제1항 제1호), 사망만인율(제1항 제2의2호)에 따른 공표 사업장 원청이 해당

구 분	계	제1호 (중대재해)	제2호 (사망2명이상)	제2의2호 (사망만인율)	제4호 (중대산업사고)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377 (100.0)	186 (49.3)	7 (1.9)	180 (47.7)	4 (1.1)

[제3항] 원·하청 통합공표

❖ (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) 원·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, 원·하청간 의사소통 부족, 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이 하청의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('18년 도입 → '19년부터 공표)

- ▲ (법적근거)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(개정 전, 법률14788호)
- ▲ (적용대상) 제조업,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 500인 이상 사업장
- ▲ (공표기준) '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'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
- ▲ (공표내용) ① 원청 사업장 정보, ②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(사고사망자 수, 만인율), ③ 하청업체의 사고사망재해 합계 및 만인율

- 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원청 공표사업장은 1개소 (동국제강(주)부산공장, 기계기구·금속제조업, 근로자 수 801명)

사업장명	사업장 소재지	사고사망만인율 (‰)			사고사망자 수 (명)			근로자 수 (명)		
		원하청 통합	원청	하청	원하청 통합	원청	하청	원하청 통합	원청	하청
동국제강(주) 부산공장	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02	6.79	0.00	14.9	1	0	1	1,473	801	672